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7
------------	------

제출년월일 : 2025. 1. 23.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아르바이트 사업 운영 시 참여 자격을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으로 확대 운영하여 대학 재학 여부에 따른 차등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명칭 변경
- 나. 조례 목적 변경(안 제1조)
- 다. 조례 대상 변경(안 제2조)
- 라. 사업 신청 서류 변경(안 제6조)
- 마. 대상자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2)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4. 12. 26. ~ 2025. 1. 15. (제출된 의견 없음)
-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4)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 5) 제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2025. 1.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체험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대학생”을 “행정업무 체험을 위한”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학생”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체험”으로, “다음”을 “접수 시작일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대학생”을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생
2.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제4조 중 “대학생이”를 “참여자가”로, “공익실현”을 “공익 실현”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대학생”을 “참여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정서식”을 “별도의 신청 서식”으로, “대학생임”을 “접수일 기준 취업하지 않은 상태의 대학생 또는 청년임”으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학생이 근무할 수 있는”을 “신청자가 선발될 시 근무하게 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학생**은”을 “**신청자**는”으로, “**등을성실하게**”를 “**등을 성실하게**”로 한다.

1. 대학생의 경우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2. 청년의 경우 미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확인서’

제7조제1항 중 “**대학생**”을 “**신청자**”로 한다.

제8조 중 “**학생**”을 “**사람**”으로 한다.

제9조 중 “**이해증진을 위한 현장실습에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이해 증진을 위한 현장실습 프로그램 등을 추진**”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u>	<u>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체험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u>대학생</u> 아르바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u>대학생</u> 아르바이트(이하 “아르바이트” 라 한다)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u>학생 본인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하 “구” 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u> <신 설> 2.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대학생</u> 제4조(근무방법)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u>대학생</u>이 구 본청, 동 주민센터, 소속 기관 및 <u>공익실현</u>을 위해 필요한	제1조(목적) ----- ----- <u>행정업무 체험을 위한</u> ----- -----. 제2조(대상) <u>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체험</u> ----- <u>접수시작일</u> <u>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u>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대학생</u> 2.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u>청년</u> 3. ----- <u>사람</u> 제4조(근무방법) ----- <u>참여자</u>가 ----- ----- <u>공익 실현</u>-----

경우 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사회 복지시설을 포함)에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수요조사)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수요부서, 업무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재능이 적재적소에 활용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제6조(신청) ① 아르바이트에 참여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에서 요구 하는 지정서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대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구청장은 신청서에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 및 기관의 업무 범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신청서에 신청사유, 희망 업무 분야 및 범위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수요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참여자-----

-----.

제6조(신청) ① -----

----- 별도의 신청 서식----- 접수일 기준 취업하지 않은 상태의 대학생 또는 청년임--- 다음 각 호의 서류-----.

1. 대학생의 경우 학생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2. 청년의 경우 미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확인서’

② -----
신청자가 선발될 시 근무하게 될-----.

③ ----- 신청자는 -----
----- 등을 성실 하게 -----.

제7조(대상자 선발)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한 경우
에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해당기관
이나 부서에 대한 지원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③ (생략)

제8조(임금기준)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금을 지급하되 구청장이 미리
정하는 임금 단가를 적용한다.

제9조(프로그램 운영)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기간 중 필요한 경우
구청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현장실습에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대상자 선발) ① -----

----- 신청자-----

-----.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임금기준) -----
----- 사람-----

-----.

제9조(프로그램 운영) -----

----- 이해 증진을 위한 현장
실습 프로그램 등을 추진-----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조례 목적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채린
연 락 처	02-3153-8309